

## 한국 유기농업,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

최동근

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

### 1.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개요

#### ▣ 설립목적

환경농업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기반의 확대를 통하여 환경농업의 발전,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.

#### ▣ 단체연혁

- 94.11. 8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·소비단체협의회 창립
- 95. 5.30 환경보전형 농업의 제도적 육성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
- 96. 1.24 제1차 정기총회 개최(사무국)
- 96.12.18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 개선방향에 관한 워크샵 개최
- 97. 1.24 제2차 정기총회(생협중앙회)
- 97. 7.23 “필당상수원 보호구역”생태기행 및 도농교류회
- 97. 8.22~9.2 제1회 협동아카데미 개최(협동교육연구원)
- 97. 9.11 환경보전형농산물 소비촉진행사(양천근린공원)
- 97.10.22 환경보전형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토론회
- 97.11.26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
- 98. 1.21 제3차 정기총회(신협 서울시연합회)
- 98. 5.28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(신협중앙회)
- 98. 7. 7 사단법인 등록 농림부 허가
- 98.11.25~26 환경농업단체 임직원 합동연수회
- 99. 1.22 제4차 정기총회(한농연 대강당)
- 00. 2. 8 제5차 정기총회(농협중앙회 대강당)
- 00. 7. 6 환농연 정책토론회(국가전문행정연수원)

- 00.11.17~19 친환경농산물 축제 2000 (양재하나로마트)
- 00.12. 8~ 9 환경농업발전연수회(농협중앙회 공주교육원)
- 01. 2. 9 제6차 정기총회(농협중앙회 대강당)

□ 사업추진방향

- 회원단체들에게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, 추진
- 환경농업관련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고, 회원단체간 유대 강화
- 회원단체 제 활동 촉진 지원 및 공동 추진
- 회원확대를 통한 환농연으로서의 통일성 제고

## 2. 조직 체계 및 현황

□ 대표자 : 회장 박 재 일(사단법인 한살림 회장)

- 임 원
  - 이사 : 9명     · 감사 : 2명

□ 상설위원회

- 생산기술연구위원회
- 소비유통위원회
- 정책기획위원회

□ 사무국
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5-2
- 전화 : 745-3843   전송 : 765-9644
- E-mail : kfsa@chollian.net

□ 회 원 : 32개 회원단체(친환경농업 생산자, 소비자, 연구단체)

### 3. 주요 사업

#### 가.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

- 환경농업육성법 청원입법 및 의원입법 추진(95년)
-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 개선방향 워크샵 (96년)
- 전국 환경보전형농업생산자조직실태조사(96년)
- 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(안) 제정 추진(98년)
- GMO에 대한 환경농업민간단체 대응을 위한 워크샵(98년)
- 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(2000)
-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 해설 검토 모임 추진(2000)
- 환경농업자재 목록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(2000)
-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추진(2001)
-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요령 간담회(2001)
- 오리농법 활성화방안 워크샵(2001)

#### 나. 친환경농업교육사업

- 친환경농업인 교육

| 1999   |      |           | 2000    |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인 원    | 횟 수  | 지원금액      | 인 원     | 횟 수  | 지 원 액     |
| 11,236 | 209회 | 198,455천원 | 12,183명 | 236회 | 250,000천원 |

-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교육(진흥청)

| 1999   |     |           | 2000   |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인 원    | 횟 수 | 지원금액      | 인 원    | 횟 수 | 지 원 액    |
| 2,856명 | 45회 | 100,140천원 | 1,659명 | 25회 | 50,000천원 |

- 유기농산물 인증자교육 (5회 280명)
- 친환경농업발전연수회 (2000)
- 친환경가족농 교육(14회 720명)
- 친환경농업 해외연수(캐나다)
- 제1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교육

#### 다. 농소정협력사업(농촌현장체험 등)

| 1999   |     | 2000    | 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인 원    | 횟 수 | 인 원     | 횟 수 |
| 4,900명 | 17회 | 13,382명 | 18회 |

#### 라. 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

-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사업 : 리플렛
-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물 제작 및 광고(2000)
  - MBC 라디오 (8회), SBS 라디오 (25회)
- 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환경농업지키기 운동 (민간단체진흥회)
  - 환경농산물 허위·과대 표시 조사 활동전개
  - 환경농산물 허위표시실태 및 개선방향 워크숍
  - 식품관련 부서 견학(식약청, 농관원 시험소) 및 간담회
- 친환경농산물 축제 2000
-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
-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

### 4. 환경농업단체의 역할과 과제

#### 가. 환경농업단체의 역할

- 민간차원의 환경농업 주도
- 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기여
  - 환경농업교육(연간 150천명), 각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, 월간지 등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
  - 생협, 한살림 등은 환경농산물의 직거래 유형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개발함으로써 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늘리고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
  - 환경농업생산현장 견학유치, 소비자 판매행사 등 도·농간의 화합의 터전을 마련하는 등 환경농업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왔음.

□ 환경농업 관련 농법 및 자재개발

- 오리농법, 우렁이농법, 쌀겨농법, 목초액 등 환경농업관련 농법 및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기여함.
- 특히,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토착적 환경농업기술을 발굴하는데 앞장섬.

□ 환경농업육성사업 및 제도 정착화 및 개선

- 환경농업 육성의 첫사업인 중소농고품질단지지원사업(친환경가족농단지)추진 시 추천서 발급, 설계서 제공, 교육 등 민간단체의 적극 협조로 사업 지속 추진
  - 가족농단지지원사업 대상자 재교육(01')
-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각종 환경농업정책의 개발 및 대안제시
- 환경농업단체의 청원입법으로 시작된 「환경농업육성법」의 제정, 개정 등 환경농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 운동 전개

나. 환경농업단체의 과제 및 발전방향

□ 환경농업 육성 발전에 중심적 역할 수행

- 민간의 자발적 운동을 결집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역할
  -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보급, 확산시키는 역할
  - 실천적이고 현실가능한 환경농업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파트너 역할 수행
- 환경농업 발전과 육성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과 관이 함께 발전시키는 데 기여
  - 친환경농업발전연수회(00')
  -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
- 정부는 민간주도의 환경농업이 전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(법 정책), 예산지원

□ 단체간의 교류 및 정보 교환과 가교 역할

- 단체간의 홍보매체 등 정보교류
- 인적교류 : 임직원 교류 및 모임
- 환경농업 기술 체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, 생산·소비·학술단체간 교류 및 정보교환 필요
  - 생산기술위원회, 소비유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
  - 지역농업적 관점에 입각한 지역토착적 기술 개발 필요(품종, 종자 등)
- 환경농업 교육 강사진 발굴 (강사 BANK구성) 및 상호 교류
- 공동교육 및 공동 행사 추진
-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결 및 정부와 농업인·소비자간의 연결 역할

**□ 환경농업의 실제적인 연구활동 수행**

-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환경농업을 확산

**□ 대사회적 기능 강화**

- 환경농업 공익광고
-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( 다양한 소비자 교육)
  - 모범현장 사례 개발하여 홍보
  - 환경농업 홍보 팜플렛 제작
- 친환경농산물 대축제등 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전개

**□ 연합회 조정기능 강화 필요**

- 정책대안 제시 및 각종 환경농업관련 대정부 창구일원화
- 회원확보 등 환경농업 관련단체의 구심점 역할
- 인증제 민간이양에 따른 준비

**□ 국제 환경농업관련단체와의 교류활성화 및 연대강화**

- IFOAM 등 국제관련기구와 교류활성화 및 정보교환
- 국제 관련기구와의 연대강화로 우리나라 유기·환경농업 홍보
- 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지도·관리자 역할 수행

## 5.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발전을 정책건의

**<생산분야>**

- 민간단체의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정립 및 체계화
  - 민간단체(생산자단체)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농법에 관해 정립되어 있지 못함.
  - 생산기술은 주로 미생물 이용 등의 투입 자재형 기술이 중심이고 개별적인 경험과 실천에 기초한 기술이 존재하고 있음.
  - 각 민간단체의 생산기술, 농법에 대한 정립, 체계화가 필요함.
-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환경농업(유기, 전환기유기, 무농약, 저농약 등)의 다양한 기술(자재)을 개발, 보급해야 함.

- 친환경농업 단계별로, 품목별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보급
- 특히 유품에 대한 기술 및 각종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보급할 필요
- 진딧물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
  
-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의 생산확대를 위하여 유기농업에 적합한 병충해 저항성 품종의 종자 및 종묘의 육종사업 및 기술 개발 필요
  - 2005년까지 농약, 화학비료를 30%로 줄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병충해 저항성 품종의 개발임.
  - 주요 작물의 종자(특히 원예용 종자)는 기존의 농약 사용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임.
  - 친환경농업적인 저항성 품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포함되어야하고 예산배정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
  
- GMO는 환경, 생태계 교란 등의 각종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에서는 GMO 배제, 추방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함.

#### 〈소비 및 유통 분야〉

-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의 금리 인하
  - 현행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금리가 5%인데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준비, 담보평가 및 농신보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면 금리의 5%의 의미가 상실
  - 시중 대출금리가 한자리수로 인하되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있음
    - 따라서 전체적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농안기금(수매자금)의 금리도 인하
  
- 친환경농산물 전담 물류센터 설치
  -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,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적정가격을 형성하는 수도권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전담물류센터 설치가 필요함.

#### 〈기타 정책 연구 지원분야〉

- 친환경농업 전담 지원 부서의 보강 및 확충
  - 친환경농업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농림부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 발전에 많

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음.

-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업 관심 증대, 국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친환경농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됨에 따른 친환경농업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확충해야 함.
- 현재 농촌진흥청이 역할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에 병행하여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체제를 진흥청 내에 갖추어야 함.
  - 친환경유기농업사업단과 같은 기획단보다는 농진청장 직속의 '유기농업연구소' 설치가 요구됨.
- 친환경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가 통합된 법률·제도로 규율되어야 함.
  -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은 생산, 가공 및 유통(소비)의 과정을 연관되어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도 가공의 영역도 포함시켜야 함.
- 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유럽의 유기농업구조에 근거한 기준이므로 아시아적농업형태(수도작)에 적합한 아시아적 코덱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.
-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(운동)으로 추진, 발전되어 왔으므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.